

선문대학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지침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 제18327호)에 따라 선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학교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본교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주관부서)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관 부서는 산학협력단으로 하고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학교기업의 설립·폐지에 관한 사항
2. 학교기업의 운영에 관한 지원 및 관리
3. 학교기업의 평가 및 관리
4. 기타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반 관리

제4조(관련부서) 학교기업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관련 부서는 각 학부 및 학과(전공) 또는 부속기관, 연구소(이하 “설립부서”라 한다)로 하고,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1. 학교기업의 설립·폐지 신청
2. 학교기업의 운영 및 사업보고
3. 학교기업의 종업원 관리
4. 학교기업 운영규정 작성 및 개폐에 관한 관리
5. 기타 학교기업의 유지 및 관리

제5조(소재지)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사시설안 및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안으로 한다.

제6조(설립 운영계획신청 등) ① 설립 부서가 학교기업 설립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립·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학교기업의 소재지(현재 운영중인 장소 및 활용할 장소)
 2. 사업종목
 3. 관련학부·학과(전공) 또는 교육과정
 4. 담당직원
 5. 재정투자계획
 6. 시설·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
 7. 학생현장실습 활용계획
 8. 수입창출계획 및 사업성 전망
 9. 학교의 투자예산 방법
 10. 기타 학교기업 발전계획
- ② 설립 부서는 학교기업을 설치·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터넷, 교내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·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학교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설립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이 포함된 선문대학교 ○○○학교기업 설립계획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설립) 총장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여 학교기업을 설립한다.

제8조(관리책임자) 총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“학교의 장의 의무”를 승계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① 학교기업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기업 운영세칙을 제정하여야 한다.

1. 학교기업 명칭 및 관리책임자
2. 목적 및 사업
3. 임원에 관한 사항
4. 종업원에 관한 사항
5. 회의에 관한 사항
6. 재정투자계획 및 수익창출계획에 관한 사항
7. 시설·설비 및 운영방법
8. 학생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
9. 회계에 관한 사항
10. 폐지에 관한 사항

② 운영세칙 제정 시 위 제①항 9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주관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0조(설치·운영비 지출범위) 총장은 본교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·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다.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본교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교내에 설립된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학교기업의 수
2.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
3. 학교기업 관련직원 및 학생의 수

제11조(현장실습산업체로의 선정) ① 학교기업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.

② 총장은 학교기업의 시설·설비,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적절성,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, 실습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지침에 의하여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받기 7일 전까지 총장과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제12조(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) ① 총장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·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,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, 학칙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대학의 학점·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결과를 학점·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

한 것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 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.

제13조(예산) ① 관리책임자는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라 대학과 관련된 예산관계법령의 범위 안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업의 예산편성·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규칙에 따른다.

제14조(회계처리) ① 관리책임자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지침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지침에 의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, 운영계산서, 자금계산서로 한다.

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따른다.

제15조(보상금) ① 관리책임자는 학교기업의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기업의설치·운영에관한규정에 따라 학칙에 정하고 학칙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 및 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 1호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(감사) 총장은 학교기업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위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, 감사는 매년 1회 정기 감사와 필요시 수시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7조(회계보고) 학교기업의 관리책임자는 분기별 사업실적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총장은 회계연도종료 후 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사업종목) 본교의 학교기업으로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학교기업의설치·운영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른다.

제19조(폐지) 총장은 학교기업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에 심각한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학교기업을 폐지 할 수 있다.

제20조(재산의 귀속)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을 본교에 귀속한다.

제21조(기록관리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, 동시행령, 동시행규칙에 따른다.

제22조(관련법령) 이 지침은 본교 학칙 제 19장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서식)

선문대학교 ○○○학교기업 설립계획서

소 속		성 명 (주관자)	
소재지	*현재 운용중인 장소 및 활용할 장소 기재	연 락 처	전화 : H P :
사업종목	*한국표준산업분류참조		
관련학부, 학과(전공), 교육과정과 연계			
사업목적			
사업분야 및 사업내용			
전공연계성 및 교수, 학생 현장실무 활용방안			
시설·설비, 기자재확충 계획 및 운용방법			

사업성전망 및 수익창출 계획	
재정투자 및 학교투자계획	
담당직원현황	
기타 학교기업 발전계획	
<p>상기와 같이 학교기업설립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</p> <p>※추진과정 협의 관련부서 회의록 1부 제출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2013 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250px;">신 청 인 : (인)</p> <p>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</p>	

※ 양식이 부족할 시 별지 작성 요망